

제 호

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

○ 기관명:

○ 소재지:

○ 기관장 성명:

○ 신고유형: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질병관리청장

직인